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25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김기현・박성민・이달희

이인선 · 김정재 · 백종헌

김선교 · 우재준 · 김 건

김장겸 · 김상욱 · 정동만

한기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 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 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15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을 "난임치료휴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30일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 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3일로 한 정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기간"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해당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제77조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제7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 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 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 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휴가-----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 1. (생략)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u>우선지원 대</u> 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에 따른 <u>난임치료휴 가 기간 중 최초 2일</u>. <u>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u>

<신 설>

<u>.</u>
1. (현행과 같음)
2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u>우선지원 대상</u>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15일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 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30일로 한정한다.
 -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 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 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

② · ③ (생 략)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 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 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 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 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 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 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게 지급한다.

② (생략)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 ② -----

는 휴가기간 중 3일로 한정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
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
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이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기간-
의3에 따는 한참시요휴가기신"
해당 출산전후휴가, 유산·사
사중기 ㄸㄴ 미하기ㅋ중기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생 략) 제77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 9 -

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
<u>출산전후휴</u>
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난임
<u> 치료휴가</u>
_